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10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허영 · 박용갑 · 이기현
김기표 · 김동아 · 이성운
최혁진 · 위성곤 · 문진석
박상혁 · 이병진 · 전진숙
문금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록 하여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도모함.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에 대한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로, “3일이내”를 “5일이내”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은 해당 자료가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나 그 밖의 사유로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사청문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를 비공개열람하고,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결로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비공개열람후 위원회로부터 다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인사청문위원, 그 보좌기관 및 국회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사청문회의 공개)”를 “(공직역량청문회의 공개와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u>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u> 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1. ----- ----- ----- ----- ----- ----- ----- <u>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 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 략) <u><신 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u>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생 략)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
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
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
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
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
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
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
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
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
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
-----.

③-----

----- 국가교육위
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
찰청장·합동참모의장·국가인
권위원회 상임위원-----

----- 대통령·
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② (생략)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후단 신설>

④ ~ ⑦ (생략)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④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20일 -----

- 5일이내-----.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

<신 설>

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은 해당 자료가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나 그 밖의 사유로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사청문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를 비공개열람하고,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결로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비공개열람후 위원회로부터 다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공무원이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인사청문위원, 그 보좌기관 및 국회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u>인사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 5. (생략) <u><신설></u>	<u>를」을 준용한다.</u> 제14조(공직역량청문회의 공개와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 ① <u>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한다. --</u> <u>-----</u>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u>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u>
--	--